

August 11,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7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8. 3. ~ 8. 7.)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2020. 8. 4. “제21대 국회 제380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20. 8. 3. 지난 달 3개 업종(가구, 도서출판, 보일러)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해당 업종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 ②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방문조사도 병행, ③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 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종별 특징과 대리점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 확인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재부 · 국토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 8. 4.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 ②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③ 기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1년 3만호, '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보도자료



[참고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국토부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 8. 5.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 ②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 ③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국토부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 8.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주요 내용으로 ① 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 연장, ③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8월 7일~9월 15일)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산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8.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필요 및 이때 민간 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②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하여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 ③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 열린다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8.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 ② 벤처투자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벤처투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2020. 8. 5.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디지털 원격교육 시대에 편리한 저작물 이용 조항 신설, ② 분쟁조정 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 도입, ③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 근거 규정 정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 더욱 편리하게



[국무조정실 · 과기부]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2020. 8. 3.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②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및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 ③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하여 ‘영상표시장치’의 범위 정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첫 현장대화(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과기부1]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발표

2020. 8. 6.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기업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기본연구과제(과기정통부)와 패키지사업(산업부) 등 기업연구소 대상 지원 강화, ② 지역 혁신기관이 구심점이 되어 기술·인력 등 R&D혁신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③ 주요 위기상황별로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적 감시방법 설정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과기부2]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발표

2020. 8. 6.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6G R&D 전략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6G 핵심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② 특허청과 협력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하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③ 6G 핵심기술 요구 성능 검증과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을 개발하고, 상용화 시점에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방식 R&D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 8. 6.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②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하게 하되,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등이 있음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관보19808호)]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입법예고(관보19808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19808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19808호)]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허가 또는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2 등)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보19809호)]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마련, 품질 경영체계 인증신청 대상업체 확대, 계약의 원가자료 제출요청 근거 마련 및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결격 및 취소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관보19808호)]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3인)]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 제18조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 7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0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32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안 제35조의2 신설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8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4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제6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신설 등)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전체적·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 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신설,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 촉진 지원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선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현행법 체계상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호 단서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제88조의2제2호 및 제9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4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및 제112조제1항)

3. 제380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20. 8. 4. 제38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총 1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 드립니다.

법안명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 교통위원장	-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제6호, 제5조, 제42조, 제44조 등)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조제4호·제5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주택이 등록 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즉시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병도의원	-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안 제13조의2 제1항, 제 13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3항, 제22조의3,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 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 제103조의3 제10항,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 제1항)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 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안 제21 조제3항) -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 여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 조제1항)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 명확화(안 제2조, 제5조)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안 제4조제1항)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시기 조정(안 제15조제1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의원	•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안 제31조 및 제31조의3) •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안 제36조의3) •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는 것을 제외(안제57조의2)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의원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안 제9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미적용(안 제10조제2호) 등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의원	•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안 제55조의2)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55조의2)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의원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안 제95조제2항) •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종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안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의 신고 의무(안 제6조의2, 제6조의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안 제6조의5제3항)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안 제43조제1항) -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안 제43조제3항, 안 제57조의2제2호) 등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